

<h1>보도자료</h1> <p>2021. 6. 21.</p>		<h2>양형위원회</h2>
	문의	운영지원단장 송영복 판사 (☎ 02-3480-1924)

양형연구회 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개최

■ 개요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 전 서울대 법전문 교수)는 2021. 6. 21.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양형연구회 제6차 심포지엄 개최하였음
- 아동학대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청에 부응하여,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양형 측면에서의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 의견을 수렴
- 심포지엄 내용과 결과는 양형위원회가 2021년 진행하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될 예정임

■ 양형연구회 6차 심포지엄 일시 · 장소 · 방청 방식

- 주제 :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 일시 : 2021. 6. 21.(월)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방청 :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중계 방식

■ 심포지엄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 1세션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주제발표 및 토론
 - ①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이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

- 아동학대범죄 실태

- 아래 표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 확산에 따른 판정 건수 대비 사건처리비율도 상승하는 추세임

<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판정·사건처리 결과('15년~'19년)

단위: 건, % / 출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아동학대 주요통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아동학대 신고건수	19,203	29,671	34,166	36,416	41,389
아동학대 판정건수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3,564	6,018	7,297	7,988	10,998
판정건수 대비 사건처리비율	30.4%	32.2%	32.6%	32.5%	36.6%

- 다만,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사건 수는 늘지 않고 있고, 사건 처리 건수 대비 형사처벌 비율은 오히려 하락 추세임

<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판정·사건처리·형사처벌 결과('15년~'19년)

단위: 건, % / 출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아동학대 주요통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아동학대 판정건수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3,564	6,018	7,297	7,988	10,998
형사처벌 건수	174	500	569	266	361
사건처리 건수 대비 형사처벌 비율	4.9%	8.3%	7.8%	3.3%	3.3%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 의견

-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을 양형인자에 반영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TF」를 두고,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함
-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TF」는 2021. 1.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전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② 아동학대범죄 중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가

중인자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아동학대범죄 전반에 확대 적용, ③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를 가중요소로 반영, ④ ‘처벌불원’ 사유가 아동학대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 ⑤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인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려할 것 등임

②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발표에 대한 토론

- 일회적인 형사처벌만으로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성행교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신속한 개입과 분리, 치료가 가장 필요한 일임
- 보건복지부의 양형기준 수정 제안에 대한 의견은 ① 처벌불원의 적용 배제는 양형기준 전반에서 다루어야 하고, ② 대부분의 아동학대범죄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보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할 경우, 대부분 아동학대범죄가 가중인자 적용을 받게 되므로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를 가중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③ 유기·학대 범죄의 체계를 생각할 때 현재의 양형기준 형태를 유지하되,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여 규정함이 타당

③ 이수연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발표에 대한 토론

- 그동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의 이유로는 ① 처벌불원, ② 돌보아야 하는 다른 아동이 있음, ③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④ 그동안 아동을 양육해 왔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음.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되면 안 됨. ① 처벌불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다른 유족(아동 사망 사건)에게도 학대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음. ② 돌보아야 하는 다른 아동이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다른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남아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분리해야 할 것임. 또한 ③ 훈육 과정이라는 사유는, 더 이상 처벌을 훈육으로 인식해서는 안 됨. ④ 피해 아동을 그동안 양육했다는 점은, 양육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임

- 아동학대사건에서 가해자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보호임. 아동학대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조사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상태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법원의 처분에 반영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보호와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
- 범죄예방으로 접근하면 대다수 아동학대는 경제적 빈곤, 정신적 문제, 학대의 대물림 등으로 발생하므로, 아동보호는 보호시설, 관계기관의 업무 등으로 연결되고 결국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거시적이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함. 이제는 가해자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임.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관에 대한 인력증원, 아동보호시설 확충과 지원이 가장 시급함

○ 2세션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주제발표 및 토론

①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

- 현행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 중 아동학대 범죄 부분 양형인자 관련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인자의 인정 요건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의 정의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강화 필요 있음

현행 양형기준상 정의	개선안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u>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u> , 피해자 또는 유족이 처벌불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다음 이유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을 제외한다
 다른 특별양형인자는 수정할 필요가 적음. ① 모든 유형에서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 경우가 더 많았고, 그로 인하여 영역분포에서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아동학대치사' 유형에서는 가중영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② 특별감경인자 중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는 적용된 사례가 없거나 매우 낮은 빈도로 적용되었고, 집행유예 결정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데, 양형인자의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③ 특별가중인자 중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빈번하게 적용되었음

-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양형기준 관련

-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포섭하는 것이 양형기준의 체계상 더 적합함
- 살인범죄 양형기준 반영 방법은 ① '아동학대살해범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방안, ② '중대범죄 결합 살인' 유형에 포섭하는 방안, ③ '아동학대살인'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거친 후 논의·결정함이 바람직함
-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포섭하여 유형을 분류하더라도,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적용함이 타당함

- 성범죄, 공갈범죄 등에서 아동학대 관련 요소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 성범죄, 공갈범죄,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에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범죄를, 명예훼손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에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범죄를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로 규정하여야 함.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 있음

② 박현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토론

- 아동학대치사죄의 권고 영역은 기본 4년~7년인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기본 영역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아동학대치상죄 역시 기본 영역의 하한이 적어도 법정형 하한과는 일치하여야 함
- 미취학아동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 피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범죄 발견이 어려운 점,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과 중대 아동학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취학 전인 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현행 양형기준의 일반가중인자가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삼아야 함

③ 허용 변호사(법무법인 인)가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토론

- 현재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의 죄,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의 죄, 아동학대중상해(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의 죄 이외의 나머지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나열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개별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①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 ②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행'을 일반가중인자가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변경, ③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자'라는 인적 관계를 특별가중요소로 규정, ④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및 제7조의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 추가 및 특별가중인자 설정, ⑤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치사죄나 아동학대중상해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권고 형량범위 상향, ⑥ 감경요소에서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를 삭제하거나 또는 내용 변경('훈육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적용되지 않도록 내용 변경) 등 제안

④ 이세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학대범죄의 양형 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토론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 기준에 아동 최선의 이익은 반영되고 있는가?」 -

- 피해 아동의 가족이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한 복합적인 양상, 폭력의 은폐성, 강화성, 중복성, 순환성 등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범죄의 양형은 '숨방망이'로 비유되고 있으나, 다른 범죄와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철방망이'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동학대 재발방지와 부모 자녀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은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법원에 제출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피해아동과 피고인의 관계나 학대 정황과 이 사건의 발전 등 사건 전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함. 또한, 사건화가 되지 않았던 경우까지 포함하려면 결국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로부터 과거 신고·접수되거나 사례관리 해왔던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를 제안함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① 유기·학대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에서도 '보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등의 신설,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추가 설정, ③ 초범 관련 인자 적용 시 형사처벌 전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관련 기록까지 고려할 것 등 제안

[별첨1] 심포지엄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출석(오프라인) 또는 접속(온라인) 확인	
14:00~14:10	식 전 행사	개회식 사회 : 양형연구회 기획간사
		인사말씀(각 3분) 1. 양형위원회 위원장 2. 양형연구회 회장
		장내 정리(2분)
14:10~15:30 [80분]	◆ 제1세션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사회 :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14:10~14:50 [40분]	주 제 발 표	•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14:50~15:05 [15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1: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5~15:20 [15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2: 이수연 (큰길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15:20~15:30	플로어토론	
15:30~15:50	중간 휴식	
15:50~17:50 [120분]	◆ 제2세션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사회 :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5:50~16:35 [45분]	주 제 발 표	• 김세중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16:35~16:55 [20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1: 박현주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여성·아동 범죄조사부 부장검사)
16:55~17:15 [20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2: 허용 (법무법인 인 변호사)
17:15~17:35 [20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3: 이세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 과 교수)
17:35~17:50	중 합 토 론	
18:00	◆ 폐회	

[별첨2] 심포지엄 포스터

양형연구회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 일 시 : 2021. 6. 21.(월) 14:00~18:00
- 장 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방 청 :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중계 방식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하신 분에 한하여 방청을 하실 수 있으며, 기술상 제약으로 방청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1. 6. 7.(월) ~ 6. 11.(금)
 - 신청 방법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형위원회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14:00~14:10	개회식
14:10~15:30	<p>제1세션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 발표 :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 과장) -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 토론 :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연 (큰길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15:30~15:50	중간 휴식
15:50~17:50	<p>제2세션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발표 :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 토론 : 박현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허 용 (법무법인 인 변호사) 이세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8:00	폐회

문의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